

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제1항중 “별표 3에 의한 여비를”을 “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”으로 하고, 동조 제2항중 “청주시내에서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”을 “청주시내에서의 출장과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의 출장”으로 한다.

[별표 1] 국내여비지급 기준표(제7조 제1항 관련)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[별표 3] 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1992년 9월 17일부터 적용한다.